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1848 |
|----------|------|

2020년 0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광수 의원 외 21명
- 나. 제 안 일 : 2020년 08월 12일
- 다. 회 부 일 : 2020년 08월 21일
- 라. 상 정 일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광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인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세계 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의 가치 전파 및 시민 인권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계인권선언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3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대한민국헌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0. 8. 26. ~ 9. 2.)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세계인권선언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 설〉</p> | <p>제13조의3(세계인권선언일 기념 등) <u>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 전후하여 이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u></p> |

※ 국제연합(UN)인권위원회는 1948년 12월 10일 각국의 다양한 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 체제를 반영하여 인류공동의 가치를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1950년 제5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하였음.

-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 1966년 ‘국제인권규약’을 발효하였고, 한국은 1990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으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대한민국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적근거가 있는 바, 세계인권선언일이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규정한 법령(「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북한인권법」) 등의 목적조항에 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세계인권선언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 시행 등의 조례반영을 통해 인권의 가치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겠음.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인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재, 인권담당관은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인권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바, 행사 실시에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II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9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 기간 : 2019. 12. 1.(일) ~ 10.(화)
- 장소 : 신청사 1층 로비, **시민청** 지하1,2층
- 행사내용 : 인권 전시, 인권 토크콘서트, 기타 인권주제 공연 등
- 수행방법 : 행사운영 대행업체 선정(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최근 5년간 행사 개최 실적〉

- ◆ 2014년 - 인권사진전, 인권문화영화제, 인권토크콘서트 개최
- ◆ 2015년 - 인권토크, 라이브콘서트 및 인권역사현장 관련 사진 전시
- ◆ 2016년 - 미로탈출 전시회, **시민청** 인권영화제 및 강연
- ◆ 2017년 - 단편인권영화 상영관, 인권연극, **인권공감** 이야기쇼
- ◆ 2018년 - 인권전시, 인권토크콘서트, 어린이 인권체험

- 다만, 세계인권선언의날 행사 프로그램 사전신청자의 참석률이 저조한 바, 사전현장 모객 방안 및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을 통해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인권담당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행사 예산의 한계로 인해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이름에 맞는 대대적인 행사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바, 서울 인권 컨퍼런스 등과 연계하여 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개선 방안 마련 등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9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관련 예산 현황]

□ 총금액 : 40,500천원

| 예산과목 | 산출내역 (단위: 원) | |
|-----------------------------------|-------------------------------------|------------|
| 계 | 40,500,000 | |
| 행사운영비 (운영대행사 : 주식회사 더블유타임즈) | 인건비(기획 및 행사운영 총괄, 보조, 진행스텝 등) | 5,347,378 |
| | 전시(기획 및 제작, LCD모니터 대여, 전시벽 설치 등) | 10,700,000 |
| | 유지필공역(설외, 음향 및 시스템 등) | 1,500,000 |
| | 토크콘서트(기획 및 연출, 설외, 시스템 등) | 3,429,000 |
| | 홍보 및 제작물(간판고 온오프라인 홍보 리플릿 포스터 제작 등) | 3,853,854 |
| | 운영(현장 운영비, 행사보험 등) | 822,080 |
| | 일반관리비 및 수익 | 4,847,708 |

- 한편,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확대에 따라 관련 행사 추진이 불투명 한 바, 관련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비대면 행사 및 홍보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세계인권의 날과 인권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대체 방안 마련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48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발 의 자 : 김광수, 경만선, 김경우, 김기덕,
김달호, 김수규, 김인호, 김정태,
김춘례, 김평남, 김화숙, 노승재,
노식래, 박기재, 송재혁, 신원철,
안광석, 이영실, 임만균, 정지권,
최 선, 최정순 의원(22명)

1. 제안 이유

- 인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의 가치 전파 및 시민 인권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세계인권선언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3조의3 신설).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세계인권선언일 기념 등)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 전후하여 이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u><신 설></u> | <u>제13조의3(세계인권선언일 기념 등)</u> <u>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u> <u>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u> <u>위하여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u> <u>전후하여 이에 적합한 행사와</u> <u>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u> |